



LEGAL UPDATE

화우 보험 뉴스레터 2024-1호

Feb. 2024

보험 판례

- 위험분담제 환급금이 실손의료보험의 보장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최근 판례 및 시사점 -

1. 사안의 개요

- 실손의료보험의 피보험자가 '환급형' 위험분담제 대상 약제를 처방, 치료받아 위험분담제 환급금을 지급받은 경우, **위험분담제 환급금이 실손의료보험의 보장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 원고는 피고 보험회사와 사이에 피보험자 A(원고의 배우자), 보험수익자 원고로 하여 실손의료보험계약을 체결(이하 '본건 계약')
 - 본건 계약 관련 약관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을 보장대상으로 규정(이하 '본건 약관')
 - 피보험자는 본건 계약 보험기간 중 암이 발병하여 입원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환급형' 위험분담제 대상 약제에 해당하는 면역항암제(이하 '본건 약제')를 처방, 치료받았고, 위험분담제에 따라 환급금(이하 '본건 환급금')을 지급받음
 - 원고는 피고 보험회사를 상대로 위험분담제 환급금을 포함한 전체 본인부담금이 모두 본건 계약의 보장대상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면서 본건 환급금을 포함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함

2. 법원의 판단

- 1심 법원은 ① 위험분담제 환급금은 "의료비분담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본건 환급금 상당 금액까지 모두 포함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비용"에 해당하고, ② 약관의 해석·적용 차원에서도 '위험분담제 환급금이 보상대상에서 제외되는 점'에 대하여 피고 보험회사가 명시·설명을 하지 않았으며, ③ 위험분담제 환급금은 "의료비분담금"이 아니므로 손해보험의 이득금지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음
- 항소심인 본건 판결은, 본건 환급금은 본건 약관에서 보상대상으로 정한 "본인부담금"에 해당하지 않고, 본건 약관 관련 피고 보험회사의 약관법상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본건 환급금 상당액의 지급을 명하는 1심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의 해당 항소 부분을 인용하였음. 주요 설시이유는 아래와 같음
 - **위험분담제 환급금은 실손의료보험 약관에서 보상대상으로 정한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음**

- I. 실손의료보험 약관상 보험금 지급대상인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은 **‘최종적으로 피보험자가 부담한 실제 경제적 지출 금액’**을 의미하는데, **위험분담제 환급금은 종국적으로 제약회사가 부담하는 비용이어서 피보험자가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이 아님**
 - II. **실손의료보험은 손해보험의 성격도 가지므로 실손보상/이득금지 원칙이 적용되는바**, 위험분담제 환급금은 피보험자의 재산상태에 차이를 발생시키지 않아 **‘손해가 인정되지 않고, 오히려 보험금 지급시 피보험자에게 추가 이득을 주게 되어 실손보상/이득금지 원칙에 반함**
 - III. **‘환급형’ 위험분담제 환급금의 경우 환급 여부 및 환급률 등이 위험분담계약에 의해 사전에 확정·예정되고, 사후환급으로 개인의 의료비 부담이 환급금만큼 줄어들게 되므로** 보험 보상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피보험자에 부당하게 불리하지 않음
 - IV. 위험분담제는 환급을 통해 약제비를 일부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신약의 효능·효과 등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약회사가 일부 분담하여, **약제에 대한 환자의 가격 접근성을 높이는 데에 그 취지가 있고, 환자에게 추가적 이익이나 혜택을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님**
- **위험분담제 환급금이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에 대하여 보험회사의 약관법상 명시·설명무가 인정되지 않음**
 - I. 실손의료보험 출시 후 경과된 기간이나 가입자 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실비보상을 넘는 경제적 이득을 얻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충분히 예상 가능함**
 - II. 본건 약관은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보상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그 의미를 달리 해석할 여지도 없음

3. 시사점

- 위험분담제는 대상 약제를 사용한 환자에 대해 제약사로 하여금 약제비 일부를 환급, 분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최근 보험 실무상 「실손의료보험의 보장대상에서 위험분담제 환급금이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고, 보험회사들이 실손의료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위험분담제 환급금을 공제하면서 본건을 비롯하여 관련 쟁송들이 발생하기 시작하였음
- 본건 판결은, 「보험회사가 위험분담제 환급금에 대해서도 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1심 법원의 판단을 뒤집고, 「위험분담제 환급금은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비용”에 해당하지 않아 실손의료보험금 지급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하여, 향후 위험분담제 환급금을 둘러싼 분쟁에 있어 중요 선례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